

제 1617 호
1991.12.1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
편집인 : 공 보 관 이 상 진
전 화 : 731-8111~3
인 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조 례
 - 제 2839 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3
 - 제 2840 호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3
- 고 시
 - 제 1991-354 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변경허가 4
- 구 고 시
 - 제 1991-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종로) 5
 - 제 1991-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중구) 7
 - 제 1991-22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강남) 7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우라 모두 열심히 일합시다”
4631

제 1991-36 호	도시계획(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강동)	7
제 1991-37 호	도시계획사업(석촌호수공원시설설치)변경시행허가(송파)	8
제 1991-4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제10차)(중랑)	8
제 1991-46 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인가(성동)	8
제 1991-5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9
제 1991-5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10
제 1991-5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성북)	10
제 1991-5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도봉)	10

● 구 공 고

제 1991-104 호	주택자재생산업자영업정지공고(야천)	12
제 1991-139 호	신조판인승인(구로)	12
제 1991-202 호	도시계획인공고(중구)	12
제 1991-528 호	주택자재생산업체등록말소처분(도봉)	13

● 사 령

조 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12.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39호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
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호 및 제23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22. 서울특별시립 엘리베이터안전원

- 가. 14세 이상 24세 이하의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 나. 직업훈련생의 취업안내 및 사후관
리

23. 서울특별시립 별첨정보원

- 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55조에 해당
자의 수용보호
- 나. 수용자의 심신건강 유지를 위한 상
담지도

쿠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1. 12. 12

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840호

서울특별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도경제협의회규
정 제9조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

의 시책을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소의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장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책
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도·자치구의
시와의 협조조치가 필요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 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도경제협의 회 제출된 안
건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직하는 시안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
회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역경제관련 실·국장
2. 자치구의 부구청장 중 약 4명
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청,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④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회에 상당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인물 당해 협
의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 가능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최후의

불합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실용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개최)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시 및 자치구와 관계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간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내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이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위원회)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 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1-354호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452호(85.6.27)로 도시계획사업 허가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74호(86.6.5), 제384호(87.6.2), 제899호(87.12.15), 제638호(88.7.29), 제1041호(88.12.29), 제425호(90.12.24) 및 제1991-300호(91.10.17)로 변경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상공과와 영등포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30-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유통업무 설비)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별시 종로구 동촌 2가 30-2 일동 유통 업무 이석준	
라. 사업의 착수 및 완공예정연월일			
변 경 전 1985. 6. 27~1991. 12. 31		변 경 후 1985. 6. 27~1993. 12. 31	
마. 사업시행 규모(변경 없음) • 대지 : 27,958㎡ • 건물 : 2개동 94,46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변경 없음.		지적승인되어, 종로구고시 제8호(90.3.8)로 사업계획 인가되었으며 종로구고시 제9호(91.6.10)로 도시계획사업계획 공람공고 완료된 도시계획기법(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 간경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구 고 시</div>		1991. 12. 11 종로구청장	
●종로구고시제1991-2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시고시 제536호(89.12.19) 및 종로구고시 제80호(89.12.28)로 변경 결정 및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도로)	
나.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명칭	규 모	사업시행자 사업의 착수, 완공예정일
가회동 산 1-4 명륜동3가 61-1	감사원~성대간 도로개설공사	B=6~8m L=670	종로구청장 인가일:1991.12.12 공공예정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명세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지 적	면적(㎡)
명륜3가 60-25	대	1.8	1.8
" 60-3	대	70.6	70.6
" 53-13	도로	79.3	79.3
" 60-7	대	16.9	16.9
" 53-39	구거	74.2	74.2
" 58-5	도로	43.3	43.3
" 53-37	대	337.1	337.1
		소유자 주소·성명 관리인 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사)서울특별시	
		명륜3가 60 재소명	
		(사)서울특별시	
		국(국세청)	
		국(문화재관리국)	

지 번	지 목	지 적	원입면적 (㎡)	소유자 주소·성명 관리인 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명륜3가 53-14	구거	118.3	118.3	(시)서울특별시	
" 53-45	구거	82.2	82.2	"	
" 55-19	대	10	10	명륜3가 55-1 김병기	
" 55-20	대	14.1	14.1	"	
" 53-43	임야	395.9	395.9	(국)국세청	
와룡동 2-103	대	211.7	211.7	명륜3가 53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 2-105	임야	118.3	118.3	국(문화재관리국)	
" 2-104	시적지	12.8	12.8	"	
" 2-100	대	211.7	211.7	종로구청	
" 2-99	임야	122.3	122.3	국(문화재관리국)	
" 2-95	사적지	459	459	"	
" 2-87	시적지	782.2	782.2	"	
" 2-105	임야	118.3	118.3	"	
" 2-102	사적지	1.3	1.3	"	
명륜3가 60-24	대	2.3	2.3	명륜3가 56 소재영	
" 60-27	대	11.6	11.6	서울시	
" 60-29	대	18	18	"	
" 61-16	대	6.6	6.6	명륜3가 유성조	
와룡동 산3-24	임	368	368	국(문화재관리국)	
" 산3-26	임	171	171	"	
" 산3-28	임	43	43	"	
계			3,901.90		

인 물 조 직

지 번	전입면적 (㎡)	선입면적 (㎡)	소유자 주소·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명륜3가 55-43	49.9	37.5	명륜3가 55-3 김광희	
" 53-43	1.4	1.4	명륜3가 55-5 유기섭	
" 53-43	3.9	3.9	"	
" 53-41	38.6	2.1	"	
" 53-14	39.8	8.7	명륜3가 55-3 노창숙	
" 53-45	4.5	3.9	명륜3가 55-1 김병기	
" 55-20	34.2	20.7	"	
" 60-29		5.9	명륜3가 60-27 박정삼	
" 60-29		21.5	명륜3가 60-29 박병기	
" 60-3		38.2	명륜3가 60-3 정기옥	
" 61-9		15.9	명륜3가 60-3 윤석옥	
계		159.7		

●중구고시제1991-2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1. 중구공고 제173호로 공람공고 완료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2413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거나 이할 고

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시장비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2. 31

중 구 청 장

가. 사업내용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사업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신당 6동	도시계획사업(도로) 신당6동 290~신당6동 285-112간 도로개설공사	E=8m L=50m	인가일로부터 92.12.31까지

나.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의 명세-별첨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별첨

●강남구고시제1991-22호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619호(91.10.19)로 도시계획시설(개포근린공원 외 2개소) 조성계획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18호(91.11.9)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같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1. 12. .

강 남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사업(공원)실시 계획인가 조사:별첨

나.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강동구고시제1991-36호

도시계획(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호(70.1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원호동 463-62~464-8간 도로개설공사를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12. .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종류의 명칭:원호동 463-62~464-8간

나. 사업시행지 원호동 463-62~464-8간

다. 사업시행규모

도로 개설 B=6: L=16m

라. 사업시행자:강동구청장

마. 사업시행일 및 준공예정일:도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기타사항: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 및 건물조사-별첨 조사참조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별첨

토 지 조 서				
번 호	위 치	지 목	면 적	소 유 자
1	천호동 464-11	대	39	강동구 천호동 464-8 김영배
2	" 463-97	대	5	" 466-25 이동삼
지 장 물 조 서				
번 호	위 치	구 분	면 적	소 유 자
1	천호동 464-8	건 물	22	강동구 천호동 464-8 김영배
2	"	"	15	"

<p>●송파구고시제1991-37호 도시계획사업(석촌호수공원시설설치) 변경시행허가</p> <p>1. 건설부고시 제676호(88.12.27)로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51호(88.12.30)로 변경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190호(89.4.17)로 변경 허가된 석촌호수공원시설 설치에 대하여 도시공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석촌호수공원시설설치)변경 시행허가하고 도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공원복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12. 10</p> <p style="text-align: right;">송 파 구 청 장</p> <p>가. 사업명칭: 석촌호수공원시설 설치</p> <p>나. 사업기간</p> <p> 당초: 1단계 87.6.30~90.5.1 2단계 91.12.31</p> <p> 변경: 1단계 87.6.30~90.5.1 2단계 94.10.31</p> <p>다. 위치: 사용면적 사실 부지면적 사업내용: 변경 없음.</p> <p>라. 사업시행자: (주)호텔 롯데 대표이사 김용재</p> <p>●중랑구고시제1991-45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 (제10차)</p>	<p>1. 중랑구고시 제83호(90.12.22)로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허가된 중랑구 면목동 49-3 의 8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변경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12. 10</p> <p style="text-align: right;">중 랑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중랑구 면목동 49-3 의 8 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 서울전문대학 시설확충공사</p> <p>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p> <p> ○ 토지-14,118㎡</p> <p> ○ 건물연면적 { 당초: 8,026.86㎡ 변경: 11,062.85㎡ (증축 3,035.99㎡)</p> <p>라. 사업시행자: 중랑구 면목동 49-3 세방학원 이사장 이용근</p> <p>마. 사업시행기한: 착공-1981.10.31 준공-당초: 1991.12.31 변경: 1992.12.31</p> <p>●성동구고시제1991-48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155호(91.5.31)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되고 성동구고시 제24호(91.7.16)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 성동구공고 제199호(91.11.6)로 도시계획</p>
---	--

회사업(하수도) 실시계획을 종합공고한 성
 동구 관내 중곡4동 147번지 일대 암거시
 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6
 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하
 수도)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하수과 및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2. 10
 성 동 구 장

가. 사업개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중곡4동 143번지 70호 ~143번지 48호간	중곡4동 147번지 일대 암거시 설공사	폭 4~5m 깊이 55m	91.10. ~92.12.31

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지장
 물)소재: 별첨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성북구고시제1991-5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4호(89.6.8)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하
 고, 성북구고시 제17호(89.9.22) 및 성북구

고시 제9호(90.3.24), 성북구고시 제17호
 (90.7.24), 성북구고시 제4호(91.2.28)로
 변경인가 고시한 "정신건강회화장공사"의
 일부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
 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2. 10
 성 북 구 장

가. 변경내용
 1) 고시내용 변경

구 분	내 용	변 경
도시계획(도로)시설결정 및 지적승인근거	서울시고시 제370호(90.11.5) 시설결정 성북구고시 제3호(90.12.20) 지적승인	서울시고시 제370호(90.11.10) 시설결정 성북구고시 제38호(90.12.20) 지적승인
시 행 기 간	89.4.26 ~ 91.12.31	89.4.26 ~ 92.12.31

2) 저촉물건 변경

구분	지 번	확권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성 명	주 소
당초	정릉동 514-3	담장 및 대문	시멘블럭	1식	유기중	정릉동 514-3
변경	정릉동 517-8	"	"	"	"	종로구 안사동 20-3

나 기타사항 변경 없음.

●성북구고시제 1991-5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43호(91.11.16)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 "중암동 52 주변도로 개설공사"의 일부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

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2. 12.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내용:토지누락 2건
 나. 변경 토지조서:따로 불임.
 다.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불임:변경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명: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주소:성북구 삼선동5가 411
 사업의 종류:중암동 82 주변도로 개설공사

의뢰부서 성북구 토목과

구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기적 (㎡)	편입면 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암동 82-63	대	54	54	도로	학교법인 고려중앙 학 원					누락
2	중암동 82-38	대	10	10	도로	상 동					누락

●성북구고시제 1991-5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호(91.7.25)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성북구고시 제25호(91.8.10)로 변경인가고시, 성북구고시 제30호(91.9.10)로 변경인가 고시한 "중암동 57-78 도로개설공사"의 일부 변경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2. 10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내용

○ 당초 준공예정일:91.12.31
 ○ 변경 준공예정일:92.12.31
 나. 기타 사항은 변경 없음.

●도봉구고시제 1991-54호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490호(91.11.20)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아래 사업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실시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명:수유4동 267번지~56-29간 도시계획사업(도로, 하수도) 개설공사

<p>2) 사업개요: $b=6m, l=165m,$ $\phi=450mm, l=165m$</p> <p>3) 사업시행자: 도봉구청장</p> <p>4) 사업기간: 1991.12~1992.12.31</p> <p>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별첨)</p> <p>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도봉구청 토</p>	<p>목과 및 건물관리권에 비치</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p> <p>8)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봉구청과 (501-540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 12. 12. 도봉구청장</p>
---	--

토 지 조 서

공사명: 수유4동 56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권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	적(㎡)		주소	성명	
1	우이동 52-10	도	92	92	우이동 52-2	이병기		
2	" 53-17	대	35	35	우이동 61-17	최정복		
3	" 53-15	대	69	69	방학동 334-47	한기상		
4	" 56-29	대	315	315	종로구 사교동 6-20	권갑조 외 1인		
5	" 56-27	대	153	26	"	"		도상면적
6	" 52-13	대	11	11	우이동 52-2	이명호		
7	" 52-12	대	10	10	우이동 52-2	이명호		
8	" 산 106-1	묘		450		국		도상면적
	보상토지			358				

물 건 조 서(건물 및 부속공사)

사업명: 수유4동 56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우이동 53-12	주거	시멘트와즙 연와조	10	53-11	최정복			
2	" 53-15	"	무허가	25					
3	" 53-16	"	"	10					
4	" 산 106-1	"	"	45					
5	" 56-28	"	철판도리트조 연와조 슬라브	20	56-28	태석민			
6	" 56-52	"	연와조 시멘트블럭	15	56-52	한기탁			

구 공 고

●양천구공고제1991-104호
주택자재생산업자영업정지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29조, 같은 법 제41조의2 제3호 규정
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한 주택자재 생산업
자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12.9
양 천 구 청 장

다 음

등록번호	신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록품목	처분내용	사 유	영업정지 기 간
13-	경남전재	양동수	양천구 신정동 880-2	시멘트 벽돌	영업정지 1월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같은법 시 행규칙 제29조(생 산기준미달)	91.12.16 ~92.1.15

●구로구공고제1991-139호

신조관인승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제1동 분소설치
에 따른 직인 및 개인용 구로구관인규칙 제
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승인
함을 동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991.12.11
구 로 구 청 장
1. 사용 개시일자:1991.12.13
2. 신조관인
독산제1동장인-분소 민원사무용
독산제1동-개인:분소 민원사무용

신조관인 및 개인

인 영



장인영

독산1동장인 및 개인(분소 민원사무용)

●중구공고제1991-202호

도시계획안공고

1.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
11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회복
지시설) 신원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기간 중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는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1.12.12
중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신설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사회복지시설	중구 신당동 366-19	421㎡		
<p>나. 공람기간: 91.12.12~12.26</p> <p>다.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도시정비과: 260-1385)</p> <p>라. 관계도서: 별첨 생략(공람장소에 비치)</p> <p>주택자재 생산등록업, 중 두단 장소이전 한 업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등록장소 처분하고 이같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1.12.12 도시계획국장</p>					
<p>●도봉구공고제 1991-528호</p> <p>주택자재생산업체등록말소처분</p> <p>- 처분업체 현황</p>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상호소재지	등록소재지	등록처분대상사유
7-177	부림거업	박병철	도봉구 창동 183-11	도봉구 창동 1077-1	시멘트 등록말소 무단 상호이전 기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사 령</div>					
<p>기능직 공무원 진보 및 인사교류</p> <p>●1991년 12월 10일자 영 제441호</p>					
성명	당	발령	당원	부서	승급
김원태	총무과		동림동주리장	지방기초원	(1차:10등급)
최상관	문화재과		차량전비사업소		
이정숙			공서구	지방사무보조원	(5차:10등급)
홍애자			체육시설관리(사)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권영수			공과		
김연수			대중문화회관	지방방호원	(방호:10등급)
김광수			체육시설관리(사)		
김세원	청소1과		주택계획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	(1차:10등급)
송경희	주차계획담당관		청소1과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1991년 12월 10일자		영 제44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이동연	지방방호원(방호:10등급)에 임함 5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
김승호	지방방호원(방호:10등급)시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총무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유병규	지방기계원(기능직10등급)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분화계과 근무를 명함	신	규
이국구	지방기계원(기능직10등급)시보에 임함 3호봉을 급함 부녀보호소 근무를 명함	신	규
5급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			
●1991년 12월 10일자		영 제44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기환	지적과 지적2계정에 포함	중 앙 구	지 방 지 적 기 과
서희석	중로구 전출을 명함	서 초 구	"
김희구	중방구 "	강 동 구	"
문연송	성북구 "	도 방 구	"
정수원	도방구 "	송 파 구	"
박성광	노원구 "	성 북 구	"
고한기	영등포구 "	중 로 구	"
홍성호	관악구 "	영 등 포 구	"
최장섭	서초구 "	노 원 구	"
도영피	강남구 "	지 강 구	지 방 지 적 기 과
박인석	송파구 "	강 동 구	"
박진상	강릉구 "	강 남 구	"
하영호	동대문구 "	구 로 구	"
심태용	구로구 "	양 천 구	"
박수남	양천구 "	동 대 문 구	"
상판진	서대문구 "	은 평 구	"
서상원	산평구 "	마 포 구	"
윤종구	마포구 "	서 대 문 구	"

행정2급 공무원 보직 및 징계			
●1991년 12월 11일자			영 제444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처	직급
유중호	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직 3월"에 처함.	내무부	사관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국가·지방공무원)			
●1991년 12월 13일자			영 제44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처	직급
윤길상	지방임업기원	농림부	구 임업기원
박영만	지방임업기원보	농림부	구 임업기원보
최성낙	"	농림부	"
배성준	"	농림부	"
유이원	임업기원보	강릉농림부	구 지방임업기원보
은일근	"	대령농림부	"
최우석	"	고령농림부	"
이성용	"	곡성농림부	"
김경수	"	해안농림부	"
김영진	임업기원	관안	구 지방임업기원
기능직 공무원 전보			
●1991년 12월 10일자			
성명	발령사항	부처	직급
이장권	3호봉을 급함. 관리과 근무를 명함.	중앙하수, 리장	지방통계원(공비) 시보 10 등 급
장옥석	3호봉을 급함. 관리과 근무를 명함.	"	"
신대식	12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지방하수보조원(수도) 시보 10 등 급
허기남	1호봉을 급함. 오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김황열	3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지방전기원 시보 10 등 급
이승욱	2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성 명	만 령 사 항	부 서	직 위	직 급
구 원 응	6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중랑하수처리장		지방전기원 시보 10 등 급
이 관 호	3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
강 종 구	3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진 규 훈	2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엄 태 산	1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김 상 홍	1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이 영 진	3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유 우 석	1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유 재 용	6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김 정 훈	2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박 흥 도	8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윤 익 중	3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지방기계원 시보 10 등 급
서 영 석	5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
국 응 만	6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		"
박 영 윤	3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임 규 문	2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정 래 설	2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하 상 윤	8호봉을 급함.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

기능직 공무원 신규임용

●1991년 12월 10일자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위
이장원	지방방호원(경비)시보10등급에 임함. 중앙하수처리장 근무를 명함.		
강옥석	"		
신내석	지방사무보조원(공보)시보10등급에 임함. 중앙하수처리장 근무를 명함.		
최기남	"		
김창열	지방전기원시보10등급에 임함. 중앙하수처리장 근무를 명함.		
이승욱	"		
구관용	"		
이원호	"		
장종구	"		
신규훈	"		
임태산	"		
김상홍	"		
이영진	"		
유우석	"		
유재용	"		
김정훈	"		
박홍도	"		
윤일중	지방기계원10등급에 임함. 중앙하수처리장 근무를 명함.		
서영식	"		
국용만	"		
박영술	"		
임규문	"		
정혜철	"		
하상윤	"		

기능직 공무원 전보

●1991년 12월 10일자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위
문동용	3호봉을 급함. 수처리과 근무를 명함.	중앙하수처리장	지방화공기원보사보

기술직 공무원 전보						
●1991년 12월 12일자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위	직급		
임청	중량하수처리장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상수도본부			지방화공기사	
김정복	위성처리2개장에 보합. 중량하수처리장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도봉구			지방화공기원	
임길윤	중량하수처리장 근무를 명함.	수처리과	동대문구		지방기계기사보	
김동길	"	"	노원구		지방기계기원	
김년봉	중량하수처리장 오니처리과 근무를 명함.	"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김창주	"	"	시초구 중량하수처리장 수처리과		지방전기기원보 지방기계기사보	
기술직 공무원 신규임용						
●1991년 12월 10일자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위	직급		
문동용	지방화공기원보시보에 임함. 중량하수처리장 근무를 명함.					
별정직 공무원 면직						
●1991년 12월 10일자						
성명	발령사항	부서	직위	직급		
모상식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중량하수처리장 수처리과			별정 8급 상당 공해측정기사	
공무 국외여행 명단통보						
●1991년 12월 10일자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속	직명	성명				
산업경제국 농축과	행정 2급 행정 5급	김동훈 김정중	일본	91.12.12 ~12.18 (7일간)	농협중앙 회 부남	선진국 종합유농시설 조사